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. 5. 6 선고 2020가단2506 판결 [부동산압류등기말소 등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2. 4. 22 선고 2021나57963 판결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. 5. 6 선고 2020가단2506 판결

전문

원 고 A

피 고 순천시

소송대리인 B

변 론 종 결 2021. 4. 22.

판 결 선 고 2021. 5. 6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 취지

피고는 원고 소유의 순천시 C 대 189㎡, D 대 42㎡, E 대 43㎡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한다)의

2016. 9. 27. 압류기입 등기된 부동산의 압류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각 압류등기’라 한다)를 말소하라.
피고는 원고에게 8,000만 원을 배상하라.

이 유

1.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

원고는 이 법원 97가합1687, 99가합1254 각 판결이 모두 허위서류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, 위 판결에 기초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무효이므로, 피고의 소송회수비용수입을 세목으로 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.

2.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타인에게 1억 2,000만 원에 매도하려 하였는데, 피고가 사건 각 압류등기말소 후 4,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각 압류등기로 인한 8,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무효가 아닌 이상,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판사 빈태욱